

#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1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1년 4월 22일
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에는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, 안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자원순환 통계조사 실시 규정을 삭제함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 중 “최소화 되도록”을 “최소화되도록”으로 한다.

안 제8조는 삭제하고,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.



<p>〈신 설〉</p> <p>제15조(재정적 지원 등) (생략)</p>	<p>제16조(교육) 시장은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제17조(재정적 지원 등)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5조(교육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6조(재정적 지원 등) (개정안과 같음)</p>
---	--	---

##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순환 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

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교육) 시장은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3조(기본원칙)</b>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,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,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<p><b>제15조(재정적 지원 등)</b> (생략)</p>	<p><b>제3조(기본원칙)</b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순환 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</u></p> <p><b>제15조(교육)</b> <u>시장은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b>제16조(재정적 지원 등)</b> (현행 제15조와 같음)</p>